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화학물질안전원
- 메일 : hyogukim@korea.kr
- 전화 : 043-830-4212
- FAX : 043-830-4299

●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1-9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제23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총 32조, 부칙 3조, 별표 1종, 별지 서식 8종으로 구성

나. 고시 제정의 목적, 용어정의를 정함

다. 이행 및 변경관리, 이행점검, 지역사회 고지의 대상, 내용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화학물질안전원
- 메일 : hyogukim@korea.kr
- 전화 : 043-830-4212
- FAX : 043-830-4299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21-3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59명의 재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1년 2월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신 규

소속	교육부 전남대학교병원		직위	병원장	성명	안영근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액 (실거래가격)	비고	
▶ 토지(소계)				26,650		
배우자	답	전라남도 담양군 대덕면 갈전리 355-10번지 1,760.00㎡		26,650 (26,650)		
▶ 건물(소계)				936,000		
배우자	아파트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한국아텔리움 건물 155.82㎡		936,000 (307,8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78,560		
본인	자동차	2014년식 K9 배기량(3,342cc)		19,260 (51,000)		
배우자	자동차	2020년식 벤츠A220 배기량(1,991cc)		39,300 (39,800)		
배우자	자동차	2019년식 K3 배기량(1,598cc)		20,000 (18,800)		